

평생교육시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과 정책 제언

김종완(Kim Jong Wan)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사무처장
e3951478@hanmail.net

평생교육은 급격한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며 수명 연장에 따른 제2의 삶을 대비하게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사이다. 평생교육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과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는 공공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글은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배치 현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키워드: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직렬화, 전담공무원

1. 들어가며

평생교육의 개념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평생교육법 2조).
- 평생교육은 개인과 지역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며,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함(평생교육법 제24조).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전문가이며, 이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 내 평생교육의 수준,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현황¹⁾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사회교육법(1896-1999) 체제 14년 동안 총 23,015명으로 연평균 약 1,644명 양성.
 - (구)평생교육법(2000-2007) 8년 동안 총 28,993명으로 연평균 3,624명 양성.
 - 개정 평생교육법 체제(2008-2018) 11년 동안 총 78,388명으로 연평균 7,126명 양성.

| 표 1 |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표

연도	1급	2급	3급	총 계	비 고	
1986~1999년	0	21,007	2,008	23,015	(구)사회교육전문요원	
2000년	22	1,548	344	1,914	(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2001년	25	2,878	513	3,416		
2002년	38	2,957	636	3,631		

1)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2018 평생교육백서』

2003년	31	2,982	601	3,614	(구) 평생교육법	평생 교육사	
2004년	32	2,776	551	3,359			
2005년	26	3,734	490	4,250			
2006년	33	3,735	143	3,911			
2007년	16	4,566	316	4,898			
2008년	33	5,448	273	5,754	개정 평생교육법		
2009년	57	5,447	260	5,764			
2010년	55	6,697	383	7,135			
2011년	30	6,808	221	7,059			
2012년	70	7,900	183	8,153			
2013년	58	7,633	156	7,847			
2014년	42	7,791	113	7,946			
2015년	44	8,278	82	8,404			
2016년	38	6,923	81	7,042			
2017년	43	6,386	67	6,496			
2018년	87	6,618	83	6,788			
총 계	780	122,112	7,504	130,396			

평생교육사 배치 법적 근거

-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나와 있음.

구분	법 조항	내용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 기본법	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평생 교육법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6조	① 평생교육 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 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평생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 배치는 각 직무에 직원을 배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배치'가 아닌 '채용'으로 수정되어야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됨²⁾.
 - 현재 13만 평생교육사 중 평생교육 실무(민간영역 포함)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는 소수(약 5%)이며, 의무 배치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2016년 17개 광역시·도 진흥원 구성 완료 등, 공공영역 평생교육 체계는 갖추어졌으나, 전문인력 배치는 거의 안되고 있어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에 관한 수정의 목소리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확대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요구
 - 1평생학습관, 1평생교육사 배치로는 부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직원 대비 50% 또는 2/3 이상 배치 요구
 -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평생교육사 직렬화 추진 요구
 - 평생교육사 대상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요구
 - 평생학습도시 지정 방식의 전면 전환 검토 등

2.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1)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 평생교육사 배치 법적 기준
 - 본 글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공공영역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평생교육의 대중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임.
 -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라는 큰 틀은 완성되었으나, 중앙-시·도-시·군·구 간의 연계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함.
 - 현 제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속 기구이며,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상호 간 법적 연결고리가 없음.

2) 전하영. 2019. 평생학습시대, 초대받지 못한 평생교육사. 2019.12.12. <<http://ltime.kr/?p=50111>>

- 이는 국가 예산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원되지 않아 국가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여할 수 없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도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평생교육사 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평생교육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기관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 기관별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완성의 의미가 아님.
 -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직원을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기관도 1명 이상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함.

표 2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기준표

배치대상	배치 기준
1. 진흥원, 시·도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1명 포함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1명 이상
4. 법 제30조-제38조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기준표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 중 2018년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만 배치기준표에 의한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58.8%만 충족함.
 - 평생교육 공공영역 전체 439곳 중 377(85.9%)곳만 평생교육사 배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62곳(14.1%)은 미충족 기관이지만 평생교육법 미비로 인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현실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함.

표 3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충족 기관 현황표³⁾

기관유형	전체 기관 수	충족 기관 수	미충족 기관 수	충족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	-	100.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7	10	7	58.8
시·군·구 평생학습관(지자체 설치)	131	122	9	93.1
시·군·구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지정)	290	244	46	84.1
합계	439	377	62	85.9

3)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2018 평생교육백서」

■ 평생교육사 적정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⁴⁾

- 현영섭(2018)은 평생교육 기관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 적정인력 산정요인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학습자 수, 프로그램 수, 직원 수로 나타났다고 밝힘.
 - 연구결과 학습자 500명마다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평생교육사 배치를 늘리는데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나왔으며, 프로그램 수는 20개당 평생교육사 한 명이 배치 강화에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직원 수는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수의 50% 산정이 평생교육사 배치를 강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사 배치규모 확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추가 배치 편차 최소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적절한 산정요인으로 ‘학습자 수’가 선정됨.
 - 이는 학습자 수 500명마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가 적절하다는 강대중(2017), 양병찬(200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동일함<표4 참조>.

표 4 | 평생교육사 적정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영역	산정요인 및 배치기준
강대중 외 (2017)	공공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50% 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평생학습관: 인구 10만 명 기준 비례 • 교육청, 교육지원청: 2급 포함 1명 이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급 포함 1명 이상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3급 포함 1명 이상 • 이 외 평생교육 기관: 2급 포함 1명 이상
	민간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수 500명 이하: 2급 포함 2명 • 학습자 수 500명 이상: 2급 포함 2명, 500명마다 1명 추가 • 학습자 수 2,000명 이상: 1급 포함 1명 이상, 비례 기준 적용
양병찬 외 (2005)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의 50% 이상 배치, 교육인원 500명 미만: 2급 1명 이상 • 교육인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 교육인원 1,000명 이상: 1급 2명, 2급 4명, 3급 1명 이상
	민간시설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1,000명 이상-1,500명 미만: 2급 1명 이상 • 교육인원 1,500명 이상-2,000명 미만: 1급 1명, 2급 2명, 3급 1명 이상 • 교육인원 2,000명 이상: 1급 2명, 2급 3명, 3급 2명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500명 미만: 3급 1명 이상 • 교육인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급 1명, 3급 1명 이상 • 교육인원 1,000명 이상: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이상
변중임 외(2015) 김영경, 이희수(2013) 김진화(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렬화를 통한 배치 확대, 배치기준 강화

4) 현영섭, 2018.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요인 및 산정기준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6권 제3호 자료를 요약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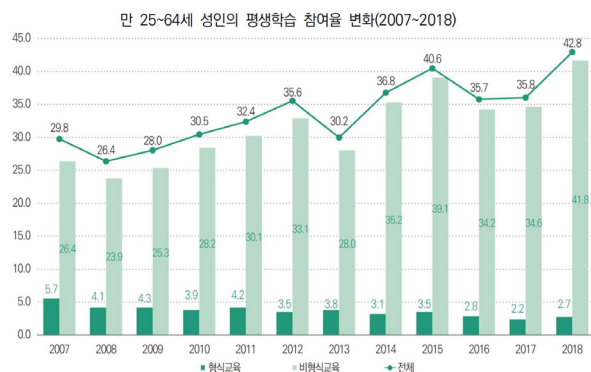
- 한국교육개발원(2018)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만 25세~64세 성인 인구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29.8%)부터 2018년(42.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 증가는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설정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요인 및 산정기준 분석’ 결과에 따른 학습자 수 증가와 평생교육사 배치 증가 필요성과도 일치함.

표 5 |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⁵⁾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형식교육	5.7	4.1	4.3	3.9	4.2	3.5	3.8	3.1	3.5	2.8	2.2	2.7
비형식교육	26.4	23.9	25.3	28.2	30.1	33.1	28.0	35.2	39.1	34.2	34.6	41.8
전체	32.1	28	29.6	32.1	34.3	36.6	31.8	38.3	42.6	37	36.8	44.5

- 학력 인정체제의 형식교육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인 비형식 교육(평생교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비형식 교육 학습자의 급속한 양적 증가는 평생교육사 추가 배치 필요성의 근거가 됨.



2) 전국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⁶⁾

■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및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국 공공영역 평생교육 전담인력은 총 8,849명이며, 이 중 평생교육사는 15.9%인 1,410명으로 기관당 평균 1.6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음.
 - 국내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율은 15.9%에 불과하며, 이는 평생교육 기관의 전문적 운영에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1,410명 중 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은 957명(67.9%)이며, 임기제 및 기간제 포함 비정규직은 453명(32.1%)으로 평생교육사 1/3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

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통계자료 SM 2018-06.

6)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요약 정리함.』

려운 고용 환경에 있음.

- 현재까지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130,396명인 반면,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1,410명으로 겨우 1.1%에 불과함.

- 광역시·도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사 비율이 각각 0.7%, 0.3%로 기관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기준표에 광역시·도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 교육의 눈높이가 높아진 학습자와 소통하고,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행정과 실무 영역에 전문적인 평생교육사가 적절한 규모로 배치되어야 함.

표 6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기관조사 현황표

(단위 : 개, 명, %)

기관유형	기관수 (A)	평생교육 전담인력 (B)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평생교육사 (C)	평생교육사 비율 (C/B)	기관당 평생교육사 (C/A)	고용형태			자격급수			
						정규직 (D)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D/C)	1급	2급	3급	
광역시·도청	17	95	12	12.6	0.7	2	10	16.7	3	9	-	
시·군·구청 ⁹⁾	228 ¹⁰⁾	1,854 (728)	400 (201)	21.6	1.8	91 (60)	309 (141)	22.8	59 (24)	340 (177)	1	
시·도 교육청	17	140	19	13.6	1.1	19	-	100.0	-	18	1	
지역교육지원청	176	996	55	5.5	0.3	43	12	78.2	7	47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70	42	24.7	42.0	23	19	54.8	10	32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7	351	139	39.6	8.2	86	53	61.9	21	116	2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¹¹⁾	131	1038 (310)	273 (72)	26.3	2.1	71 (11)	202	26.0	34 (10)	239 (62)	-
	교육감 설치·지정	290	5243	743	14.2	2.6	693	50	93.3	27	674	42
총계 ¹²⁾	877	8,849	1,410	15.9	1.6	957	453	67.9	127	1,236	47	

7)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기관의 전체 직원 수임

8) 정규직+무기계약직

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평생학습관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10)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11)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군구 인력 현황을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현황으로 활용하였으며 시군구 현황은 괄호 안에 표기

12) 중복된 현황을 제외한 합계

-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 877곳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곳은 627곳(71.5%)이며, 250곳(28.5%)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평생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7 |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현황

(단위 : 개, %)

기관 유형		전체	배치	미배치	배치율	
지방 자치단체	광역시도청	17	6	11	35.3	
	시·구·군청	228	175	53	76.8	
	시·도교육청	17	10	7	58.8	
	교육지원청	176	39	137	22.2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	-	100.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7	17	-	100.0	
	시·구·군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131	123	8	93.9
		교육감 설치·지정	290	256	34	88.3
	소계	421	379	42	90.0	
계	877	627	250	71.5		

3) 광주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¹³⁾

■ 광주시역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광주시역 공공기관 평생교육 전담인력은 총 463명이며, 이 중 평생교육사는 17.7%인 82명으로 기관당 평균 2.6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음
 - 광주시역 평생교육사 배치율은 17.7%로 전국 평균 15.9%와 유사하며,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0명임
 - 자격증 급수를 보면 1급 자격증 비율이 14명(16.8%)으로 지자체와 평생학습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광주광역시청에 평생교육 전담인력은 4명, 시교육청 전담인력은 7명이지만 평생교육사는 단 한 명도 없음

13)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요약 정리함.

- 이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 시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 차이로 기획 방향과 예산 규모 설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됨

표 8 | 광주지역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단위 : 개, 명, %)

기관유형	기관수 (A)	평생교육 전담인력 (B)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평생교육사 (C)	평생교육사 비율 (C/B)	기관당 평생교육사 (C/A)	고용형태			자격급수				
						정규직 (D)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D/C)	1급	2급	3급		
광주광역시청	1	4	-	-	-	-	-	-	-	-	-	-	
5개 지자체	5	32	9	28.1	1.8	3	6	33.3	6	3	-	-	
광주시교육청	1	7	-	-	-	-	-	-	-	-	-	-	
지역교육지원청	2	34	4	11.8	2.0	3	1	75.0	1	1	3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1	16	8	50.0	8	7	1	87.5	-	8	-	-	
평생 학습관	지자체 설치	4	18	6	33.3	1.5	2	4	33.3	4	2	-	-
	교육감 설치·지정	17	352	55	15.6	3.2	52	3	94.5	3	52	-	-
총계	31	463	82	17.7	2.6	67	15	81.7	14	66	3	-	

표 9 |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단위 : 개, 명, %)

기관유형	전담 인력 (A)	평생교육 사수 (B)	평생교육사 비율 (B/A)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현황								자격급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급	2급	3급	
정규직 (C)	무기계약 (D)	계 (C+D)	정규직 비율	임기제 계약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계약	계	1급	2급	3급					
광주광역시청	4	-	-	-	-	-	-	-	-	-	-	-	-	-	
구청	광산구청	4	1	25.0	-	1	1	100.0	-	-	-	-	1	-	-
	남구청	5	1	20.0	-	1	1	100.0	-	-	-	-	1	-	-
	동구청	10	2	20.0	-	1	1	100.0	1	-	-	1	1	1	-
	북구청	6	1	16.7	-	-	-	0.0	1	-	-	1	1	-	-
	서구청	7	4	57.1	-	-	-	0.0	2	2	-	4	2	2	-
소계	32	9	28.1	-	3	3	33.3	4	2	-	6	6	3	-	
광주시교육청	7	-	-	-	-	-	-	-	-	-	-	-	-	-	
지역 교육 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16	3	18.8	1	1	2	66.7	-	-	1	1	-	3	-
	서부교육지원청	18	1	5.6	-	1	1	100.0	-	-	-	-	1	-	-
소계	34	4	11.8	1	2	3	75.0	-	-	1	1	1	3	-	
총계	77	13	16.9	1	5	6	46.2	4	2	1	7	7	6	-	

- 광주광역시에는 구청 9명, 교육지원청 4명으로 총 13명의 평생교육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청과 교육청에는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가 없음
 -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구청이 3명, 교육지원청 3명이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은 46.2%임
 -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은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9명의 평생교육사가 재직중임
 - 자격급수별로 보면 평생교육사 1급 자격소지자 7명, 평생교육사 2급 자격소지자 6명이 재직중임

3. 평생교육사 배치 현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문제

-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의무고용이 빠져 있음
 - 헌법 31조 5항에 의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고, 교육 기본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평생교육법에 의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 총 3,510여 곳에 달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 하는 것임
 -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 비자격 실무자는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거나 전문자격자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함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행정영역에 있는 광역지자체,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 광주지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가 한 명도 없음
- 공공도서관은 수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규정이 없음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강화

-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강화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행정 영역에서 시작하여 평생교육전담기관, 민간 영역 순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행정기관과 전담기관에 전문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평생교육의 정책방향과

- 예산 배정,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상호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됨
-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기관에 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기타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되어야 함

구분	배치대상	기존 배치기준 안	배치기준 개선 안
평생교육 행정	기초자치단체	-	• 인구 5만 이하 2명, 10만 명당 평생교육사 1인 필수 배치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공공 평생교육 전담기관	진흥원, 시도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직원의 50% 이상 평생교육사 배치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1명 포함 2명 이상 • 정규직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1명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기타 공공영역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공공도서관 포함)
민간영역 (법 제30조-제38조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등록 학습자 수 기준(연인원)〉 • 등록 학습자 수 500명 이하 평생교육사 1명 배치 • 이후 500명당 1명씩 증가 • 3,000명 이상은 6명 이상 배치	

- 광역시·도와 교육(지원)청도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안에 포함되어야 함.
 - 시·군·구 2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 이하 2명, 10만 명당 평생교육사 1인 추가 배치할 경우 총 1,019명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¹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도 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직원의 50% 이상 평생교육사 배치를 늘려야 함.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의 50%가 평생교육사로 배치되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정 설치한 평생학습관의 배치율은 각각 33.3%와 15.6%로 매우 낮음.

14) 양병찬. 2018.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 평생교육사 배치가 공공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법적 배치 기준 충족에 필요한 1~2명 정도만 채용하고, 설립 시 채용조건 충족 후 퇴사에 따른 미충족 상태가 되더라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음.

평생교육사 직렬화(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신설)¹⁵⁾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되어야 함.
- 평생교육사 직렬화 문제는 평생교육사 배치율 확대와 연관이 있음.
 - 직렬화는 조직과 승진 구조,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평생교육사가 3,000명 가까이 배치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함.
 - 현재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중 총 종사자는 1,410명이며 자체단체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370명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으로 직렬화에 어려움이 있음.
 -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배치기준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초단체마다 4~5명 정도 배치할 경우 약 1,000명 정도 배치 인원이 증가함.
 - 전국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약 3,500명 정도 증가함.

법령명	신설 안
평생 교육법	<p>제26조의2 (평생교육 전담공무원)</p> <p>①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전담공무원은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전담공무원은 평생교육 수요와 실태조사,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과 평생교육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 2018년 5월 15일 조승래 의원은 평생교육법 신설(제26조의 2) 안에 관한 대표 발의를 통해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15) 다들, 2017.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요약정리 <<https://webzine.smile.seoul.kr/18472/>>

평생교육분야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교육부 예산 중 약 1%가 평생교육 예산으로 매우 낮으며, 그나마 예산의 상당 부분은 대학과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대부분임.
 - 평생교육 현장 실무는 지자체 중심이지만, 교육 재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의 상당부분은 대학과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으로 편중됨.
 - 교육부 예산 중 순수한 평생교육 예산은 0.08%에 불과하며, 예산 지원 없이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사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시 산하 출자기관이지만, 시청 조직도에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없으며,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에 주무관 한 명이 진흥원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 이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 배정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평생교육 진흥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 평가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평생교육진흥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평생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진흥업무가 사무로 규정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함.